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4. 30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9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조정 (안 제5조제1항)
(현행) 30만원 미만 → (개정안) 45만원 미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것을 참고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세액 기준을 “30만원 미만”에서 “45만원 미만”으로 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있고, 우리 구(區)는 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, 고지서 1매 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,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함.
- 교부 혹은 전자송달의 방법은 우편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전자송달의 방법에 동의한 자에 한하므로 통상적으로 일반우편 혹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한다고 할 수 있음.
- 한편, 2023년 12월 29일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일부개정되어 지난 23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, 행정안전부는 「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(적용요령)」을 통해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 관련 조례 또한 물가·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음.
- 따라서,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세액 기준을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, 지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던 30만원 이상 45만원 이하의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322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4. 4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조정 (안 제5조제1항)
(현행) 30만원 미만 → (개정안) 45만원 미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4항, 제56조제2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2. 29. ~ 2024. 3. 27. / 27일 간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| 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45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|